

第 159 回國會(定期會)

政治關係法審議特委
第 8 次 法案審議班(2班) 委員會會議結果報告

受信 :

職	事務	總長	徐	10	30
姓	李	忠	漢	10	30

專門委員

석 두 수 (印)

會議日時 1992. 10. 30. (金曜日)

00 時 05 分 開議
15 時 20 分 散會

審查된案件	審查經過 및 結果	特記事項
1. 대통령선거법	<p>○ 대통령선거법 합의 : 9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거권자의 연령인하문제는 현행 20세로 합의. 선거운동 방법의 포괄적 제한 규정 삭제 여부. - 현행대로 법정선거운동 방법 이외는 할 수 있도록 함.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통·리·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대통령 임기원료일전 100일 까지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후 6月 이내에는 복직할 수 있도록 함. 정견·정책의 방송광고는 선거운동기간중 TV, 라디오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도록 하되 각 1일 5회 1분이내로 제한키로 함.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 대상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 간부, 통·리·반장,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임·직원,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(새마을운동협의회,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,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한정)의 상근 임·직원 및 그 중앙회장을 추가하고, 공무원등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홍보, 법정이외의 금품의 제공, 선거운동의 기획 및 그 기획의 실시에의 관여, 지지도 조사, 기공식 거행, 휴가중 타기관의 방문금지 등을 행위제한 내용에 추가 함.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법정형 등 벌금형을 삭제 함.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국회의 다수의석순으로 제1당, 제2당, 제3당이 추천하는 자로 함. 우편투표함의 용지는 현행대로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도록 함. 선거법에 대한 제정신청절차는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함. 	<p>○ 사회자 : 황윤기 위원</p>

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法案審議班

第一次會議出席委員名單

交涉團體	委員名	出席	備考	委員 員 員 員 員	議員	出席	備考	職員	姓名	出席	備考
民 自 黨	金重衛	○						專委 門員	石斗洙	○	
	李仁濟	○						立法 審議官	朴奉國	○	
	黃潤鎮	○						立法 審議官			
民主 黨	朴相千	○						立法 審議官			
	鄭璣浩	○									
國 民 黨	車秀明	○									